

● 제28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5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오현정 의원(찬성의원 16명)
- 나. 제안일 : 2018. 8. 13.
- 다. 회부일 : 2018. 8. 1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한 부상자나 무공수훈자 및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국가가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지원액이 타 시도보다 낮은 실정임.
- 이를 감안하여 해당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 나. 주요내용

- 기존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원액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여 확대 지원함(안 제5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현재 월 5만원)을 상향 조정(개정 후 월 10만원)하기 위해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2 주요사항 검토

-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원액 확대(안 제5조제2항)
  -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음.
  -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매년 2~3천명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sup>1)</sup>,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의 시급성이 있다고 하겠음.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78세인 바,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87.2세)을 감안하면, 기대여명(남은 평균생존연수)이 9.2세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와 연령별 현황자료에서도 노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참전유공자의 평균 감소율이 연평균 6.1%에 이르고 있음.

〈표 1〉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 및 연령별 현황자료

■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전체인원, 국가보훈처 등록)

구 분	'15. 5월	'16. 5월	'17. 5월	'18. 5월
유공자 수	68,561	64,824	60,754	57,480
전년대비	-	△3,737 (5.5%)	△4,070 (6.3%)	△3,274 (6.4%)

■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18년 6월말 기준/ 평균 78세)

합 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38,179	3,660	15,567	3,851	2,539	9,757	2,586	210	9

※ '16년 5월~'18년 5월(3년간) 평균 감소율은 6.1%

- 또한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과 비교하여 보면,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비교적 낮게 책정된 실정인 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거주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도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표 2〉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현황('18년)

- 부산, 인천 등이 '18년 참전명예수당 인상(5만원→ 8만원)

주요 시·도	경 기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지원액(원)	10,000	80,000	80,000	80,000	50,000

※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군·구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음

###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오랜 기간 부족했던 점에서 참전 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또한, 참전유공자의 고령으로 인한 사망에 따른 감소 추이와 연령별 현황 등을 감안할 때도, 조속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이 및 소요예산

※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참 고 1**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이 및 소요예산**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이**

○ ‘14~’18년 평균 지급인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예 산	연간 집행액	월평균 지급인원	전년대비인원
2014년	311억	30,649	51,082	-
2015년	311억	30,685	51,142	△60
2016년	306억	29,182	48,637	△2,505
2017년	306억	26,105	43,508	△5,129
2018년	264억	11,674(6개월)	38,913	△4,595

**참전명예수당 소요예산**

○ ‘19~’23년 소요예산(5만원증액시/ ‘18년 월평균지급인원에 감소율 6% 적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인원	44,000	<b>36,600</b>	34,400	32,300	30,300	28,500
전년대비	-	<b>△2,300</b>	△2,200	△2,100	△2,000	△1,800
소요예산	26,400	<b>43,920</b>	41,280	38,760	36,360	34,200
전년대비증감	-	<b>증17,520</b>	△2,640	△2,520	△2,400	△2,160

(단위 : 천원)

지부	지방자치단체별 명예수당			시·군·구 지회
	총액(원)	시·도	시·군·구	
서울	50	-	-	서울특별시 전체
부산	230	80	150	기장군
	130	80	50	강서구
	80	80	-	금정구, 남구, 동구,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	80	80		대구광역시 전체
인천	200		120	옹진구
	180	80	100	강화군
	130	-	50	서구
	110	-	30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광주	70	50	20	서구
	60	50	10	남구
	50	50	-	광산구, 동구, 북구
대전	50	50	-	대전광역시 전체
울산	150	-	150	남구, 동구, 중구, 북구, 울주군 <b>*만 79세이하 : 10만원</b>
강원	150	-	150	양구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120	-	120	철원군
	100	-	100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홍천군
	70	-	70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60	-	60	고성군
	50	-	50	강릉시, 춘천시
경기	130	10	120	여주시
	110		100	김포시, 이천시, 용인시, 양평군, 화성시
	90		80	오산시
	80		70	광명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연천군, 포천시
	60		50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60		50	시흥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가평군



지부	지방자치단체별 명예수당			시·군·구 지회
	총액(원)	시·도	시·군·구	
충북	100	-	100	제천시,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
세종/ 충남	250	-	250	계룡시
	200	-	200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150	-	150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세종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홍성군
	100	-	100	논산시, 서천군
전북	80	-	80	진안군
	70	-	70	부안군
	60	-	60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50	-	50	김제시, 남원시, 전주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남	100	-	100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80	-	80	해남군
	70	-	70	장성군
	60	-	60	나주시, 해남군, 화순군
	50	-	50	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경북	110	10	100	김천시, 봉화군, 울진군
	100		90	군위군, 경산시, 문경시, 청송군
	90		80	구미시, 의성군, 청도군, 영천시, 칠곡군
	80		70	상주시, 안동시, 예천군, 경주시, 영주시, 포항시, 고령군, 성주군
	70		60	영덕군
	60		50	영양군, 울릉군
경남	200	100	100	경상남도 전체
제주	150	150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b>*만79세 이하 : 9만원</b>